

#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

[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]

강 남 구

#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

## 제1조(과업불이행에 대한책임 확보)

1. 계약상대자는 성실한 과업수행에 대한 책임확보를 위해 계약금액의 10/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행담보금으로 예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업 불이행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비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

- ① 용역 근무자가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규정을 위반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8시간내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
- ② 용역근무자가 이해당사자와 결탁 등 이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
- ③ 용역근무자가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
2. 제1항의 과업 불이행에 따른 용역비 감액 및 계약 해지 기준은 각 호와 같다.  
(단, 월 발생건수는 월별 용역비 지급기간에 대한 건수임)

- ① 월1회 발생시 : 월 용역비 지급 총액에서 5%감액
- ② 월2회 발생시 : 월 용역비 지급 총액에서 10%감액
- ③ 월3회 발생시 : 계약해지 및 계약금 환수
- ④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의 결탁 등 이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액의 환수와 고발 조치

## 제2조(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)

- 1. 용역근무자는 각종 사고를 대비하여 용역업체 장비로 정비 상황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다
- 2. 용역수행으로 인한 신체상, 재산상 손해 발생시에는 용역업체의 책임하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## 제3조(지도 감독 등)

- 1. 용역업체는 용역근무자를 용역업체에 정규직원임을 증명하는 사원확인증명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2. 용역근무자는 매일 업무개시 10분전까지 해당과에 출근하여 과업지시서를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한다
- 3. 용역근무자는 우리구 작업지시에 의거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지도 감독을

받는다.

#### 제4조(단속공무원의 보호)

1. 계약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우리구 단속직원의 모든 보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#### 제5조(연장 근무수당)

1. 연장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자에 한하여 정산 지급한다.

#### 제6조(기타)

1. 2006년 강남구민간위탁및관리에관한조례 개정시 단위사업별 개별 계약 조례에 따르며 강남구의 요구에 의거 차후 갱신할 수 있다
2. 강남구는 현재 확보된 E-Mail list 또는 강남구 Panel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반기마다 실시하여 인센티브제 또는 페널티제를 시행할 수 있다
3. 인센티브와 페널티제에 따른 구체적인 상벌규정은 강남구의 주민만족도 평가제 시행계획에 따른다
4. 본 약정 사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강남구청 주관부서의 해석에 따른다.

#### 제7조(구청업무지원)

1. 계약자는 불법광고물 철거 등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해당 부서장의 인력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.